
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. 노인장기요양법 제2조, 그러나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생활시설 수가 증가되면서 이와 관련한 노인학대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.

생활시설 학대 추이: ('08) 55건(2.3%) → ('13) 251건(7.1%), 4.5배 이상 증가 (보건복지부·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(2013), 노인학대 현황보고서.)

노인학대,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?



“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”

- 실버타운, '노년의 안식처' 혹은 '빛 좋은 개살구' <SBS TV 2014. 12. 23>
- 인권위, '폭행피해 방치' 노인요양시설 업무정지 권고 <한국경제 2014. 10. 28>
- 학대 받는 노인 10명 중 6명, 수년간 지속적 피해 입어 <경향신문 2014. 10. 02>
- 요양시설 등 생활시설 내 노인학대 5년 새 5배 급증 <연합뉴스 TV 2014. 08. 25>
- 치매노인 학대 5년 새 3배 <헤럴드경제 2014. 05. 29>
- 노인요양시설 치매노인 테이프를 결박한 복지사 검거 <국민일보 2014. 03. 19>

※ 대부분의 시설은 노인인권보호에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
노인학대,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.

노인학대란?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, 정신적, 정서적,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. <노인복지법 제1조제2항4호>

Q1 노인학대사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,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(1577-1389), 보건복지부 콜센터(129) 또는 수사기관(112)에 신고하시면 됩니다.

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(24시간 상담) 1577-1389 또는 129

신고자의 비밀보장 :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(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).

Q2 노인학대사례 업무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?



Q3 노인학대, 처벌규정이 있나요?

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처벌 기준 노인학대 법적 처벌 기준 : 노인복지법,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, 형법 적용 가능

-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⇒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원 이하 벌금
-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/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·성희롱 등의 행위
- 노인유기 및 착취행위를 포함 기본적인 보호,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
-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⇒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원 이하 벌금
- 노인을 위하여 증여,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⇒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 벌금
-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보호를 금지하여 위법 ⇒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
-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⇒ 300만원 이하 과태료
-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를 방해한 자 ⇒ 200만원 이하 과태료

노인학대 유형과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측징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.

신체적 학대
신체의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

- 위축요, 두꺼비 등 물건에 끼여 상해
- 약인 종적 또는 열경할 수 있는 상처 및 부상이 보임
- 영양과잉 및 영양과잉 또는 영양과잉

정서적 학대
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

- 무관심 또는 무관심 및 무관심
- 폭력, 국한적인 행동 또는 허세행위를 부릴
- 말하기를 격려하거나 불리한 모습으로 눈치를 볼

성적 학대
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

- 신체의 주요 부분을 노출시킴
- 고통을 주거나 혹은 고통을 주거나
- 성행위에 강요되거나 속옷이 벗겨짐

경제적 학대
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

-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
- 노인이 필요로 한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
- 귀찮게 하거나 은행계좌의 무관심한 거래가 있음

방임
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(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방임 포함)

- 대소변 냄새, 땀, 냄새, 욕창 등이 발생함
- 의복 및 의복 등의 열매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
- 주거 환경
- 노인 스스로 의식주를 거부하거나 자살을 시도함 (자기방임)

유기
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
-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림
- 노인을 사설,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문서를 하지 않음

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?

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전국 17개 시·도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권익향상을 위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

여러분의 관심으로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노인학대 신고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
24시간 상담 1577-1389 또는 129



보건복지부



노인보호전문기관